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7일

발 의 자 : 임현주, 권영애, 이인순, 강수진,  
이관우, 진선아

#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나.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(안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도시계획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
2.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
3.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

③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3조제2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례」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 
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 
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 
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이하  
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
례」 제63조제2항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